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4차개정 2024-01-2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1.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위연계과정 포함) 중에 있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개정 2022.07.19,개정 2024.01.23>

가. 휴학생 중 연구개발사업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신설 2024.01.23신설 2022.07.19>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설 2024.01.23신설 2022.07.19>

다.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신설 2024.01.23신설 2022.07.19>

2. “학생인건비”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4. “계정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기관단위”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 계정(이하 “연구기관계정”이라 한다)과 연구책임자 단위로 운영하는 통합관리 계정(이하 “연구책임자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운영주체의 책임과 의무

**제3조(디지스트의 의무)** 디지스트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07.19,개정 2024.01.23>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디지스트의「연구실 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4.01.23>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디지스트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균등지급 체계,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
8.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작성,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4.01.23>
9.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개정 2024.01.23>
4.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
5.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개정 2024.01.23>
6. 전년도 활용 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개정 2024.01.23>

7.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4.01.23>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개정 2024.01.23>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개정 2024.01.23>

### 제3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6조(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 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100퍼센트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위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 진학 후 이수 학기의 2학기까지를 석사과정으로, 그 이후의 이수학기를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개정 2024.01.23>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개정 2023.03.22>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개정 2023.03.22>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개정 2023.03.22>

③ 디지스트는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BK장학금 등)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서 받는 인건비

3.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④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한다.

1. 정부수탁과제 및 기본사업의 학생인건비

2. 사전에 연구비 지원기관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기로 협의한 산업체 수탁과제 및 일반수탁과제의 학생인건비

3. 정착연구지원비 중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제7조(계정 설정)** ① 디지스트는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정은 연구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설정하고 제6조의 인건비를 적립,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구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연구비 지원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즉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사용 실적보고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③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연구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한다.

⑥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집행비율(학생인건비 수입총액(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 대비 집행총액)의 기관 평균이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소관 통합관리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인건

비계상률을 산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을 각각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를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인건비계상률을 정할 수 있다.

1.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
2.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연구자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계정책임자가 인정하는 학생연구자  
가.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나. 석사·박사 과정의 입학예정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 말일까지

③ 계정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기준으로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관리부서는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기(6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⑤ 디지스트와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제3항의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01.23>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의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2024.01.23>

⑥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이때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생인건비의 균등지급)** ① 연구기관계정은 단일 연구기관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학기(6개월) 단위로 연구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매월 균등하게 지급(이하 “균등지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균등지급액을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월 440,000원<개정 2023.03.22>

2. 박사과정: 월 600,000원<개정 2023.03.22>

③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맞춤형 장려금 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장려금 비대상자 및 장려금 대상 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해당 학생연구자의 통합관리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구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⑥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균등지급 대상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에게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액을 연구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의 차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제10조제7항의 금액을 제외한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한다.

**제12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

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디지스트와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07.19, 개정 2024.01.23>

**제13조(학생인건비의 이관 및 반납 등)** 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디지스트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연구관리부서는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frac{\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egin{aligned} & \text{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 \times \text{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 \div \text{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end{aligned}$$

②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단체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디지스트 내 다른 연구자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 연구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변경 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이상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frac{\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times (\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관여 연구개발기간}}{\text{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frac{\text{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times \text{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text{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은 연구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한다.
- ④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을 연구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4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디지스트는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1.23>

**제15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01.23>

**제16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7조(학업·연구권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안전 보장)** 디지스트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디지스트의 「연구실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24.01.23>

**제20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관리부서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관리부서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처벌·제재)**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디지스트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디지스트 감사실, 인권센터 등 관련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07.19>

③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2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디지스트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1.10.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3.2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2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0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4.01.2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연구참여확약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000 및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 할 수 없음  
다. 계정단위 월 인건비계상률 및 학생인건비 지급액(세금포함)

구분	계정명	지급액(원) / 인건비계상률(%)					
		3월/9월	4월/10월	5월/11월	6월/12월	7월/1월	8월/2월
균등	DGIST						
차등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마지막 평일(공/휴일 제외)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명			
소속 (학과명)		직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사.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명			
소속 (학과명)		직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 3. 기타 협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                   (서명 또는 인)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X)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X)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